

---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홍보 인쇄물 출력 과업내용서

---

2025. 1.



안 산 문 화 재 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I

## 과업목적

본 과업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자인 계약상대자 간 홍보 인쇄물 인쇄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 추진방향

- 공연정보, 축제장 구성 현황 등 효과적인 정보 전달
- 편리하게 축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객 편의성 확대
- ESG경영 방침에 맞는 친환경 용지 및 콩기름 인쇄

III

## 과업개요

- 과업명: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 인쇄물 출력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5. 5. 3.(일)
- 과업범위: 축제 사전리플렛, 프로그램북, 초청장 인쇄
- 추정금액: 금 14,000,000원(금일천사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 참가자격
  - 안산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자
  - 기타인쇄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5510159901)
  - 출판사(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업종코드: 1518)를 등록한 업체

홍보 인쇄물 출력 제작목록 제작명: 사전리플렛

- 제작부수: 3,000부
- 제작면수: 12면
- 제작규격: 250mm\*130mm(1면)
- 제작재질: 200g 크러쉬(친환경종이)
- 인쇄색도: 양면 칼라(콩기름 잉크 인쇄)
- 제본종류: 중첩제본

 제작명: 초청장 및 규격봉투

- 제작부수: 각 500부
- 제작면수: 초청장 2면, 규격봉투 2면
- 제작규격: 100mm\*200mm(1면)
- 제작재질: 초청장-250g(친환경종이), 규격봉투-120g
- 인쇄색도: 초청장-양면 칼라(콩기름 잉크 인쇄), 규격봉투-4도
- 기타사항: 봉투에 양면테이프 작업까지 완료 후 납품

 제작명: 프로그램북

- 제작부수: 15,000부
- 제작면수: 86면
- 제작규격: 150mm\*210mm(1면)
- 제작재질: 180g 크러쉬 표지, 80g 미색 내지(친환경종이)
- 인쇄색도: 표지 4도, 내지 4도, 양면 칼라(콩기름 잉크 인쇄)
- 제본종류: 무선제본

※ 상기 제작규격과 수량은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변동될 수 있음

## □ 규격, 재질 및 사양

- 기본 사양, 규격, 디자인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인쇄물 시안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시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일부 변경 또는 시안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인쇄물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 및 색상은 섬세하게 제작
- 인쇄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작
- 인쇄물의 색상 및 텍스트가 디자인 그대로 반영되고 가독성이 높게 인쇄되도록 철저한 검수 후 납품

V

## 추진일정

구 분	2월	3월	4월	5월
사전리플렛 인쇄				
사전리플렛 납품		225		
초청장 인쇄				
초청장 납품			327.	
프로그램북 인쇄				
프로그램북 납품				424
검수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 하에 변경 가능

VI

## 수행지침

###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를 준수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발전적·전략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시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的 해석을 우선시한다.

#### “발주기관”的 의무

- “발주기관”은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的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계약상대자”的 의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的 지도·감독에 협조하며 과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

#### 보안관리

-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자료 및 업무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를 계약기간 및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한다.

#### □ 납품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종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的 부담으로 한다.
- 모든 물품의 규격, 재질, 방식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포장 시 내용물 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 인쇄물의 하자는 “계약상대자”가 1년간 담보한다.

#### □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의 사정변경 혹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당 조항에서 정하는바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이미 용역을 완료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은 기성부분
  -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과 지출 증빙이 가능한 투입비용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선 및 서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사항이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자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납세 의무 위반, 4대보험 체납, 죄저  
임금법 위반,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상대자” 가 과업을 포기하는 경우

□ 분쟁 해결

-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는 상기 명시된 합의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예규와  
“발주기관” 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 과 “계약  
상대자” 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 과업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할 시 과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